

의안번호	제2799호
의결 연월일	2024. 7. . (제 회)

의결 사항	
----------	--

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발의자	최두임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4. 7. 2.

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(최두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9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 최두임, 김향숙, 정영환,
김원순, 우정욱, 이정숙
의원(6인)

1. 개정이유

-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·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(안 제2조)
 - 당초 5명 ⇒ 10명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, 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
 - 「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
-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34호
 - 예고기간: 2024. 7. 2.(화) ~ 7. 8.(월) [6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4. 본 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규칙 제 호

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5명”을 “1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<u>5명</u> 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	제2조(구성) ----- ----- <u>10명</u> ----- ----.

□ 지방자치법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령과 윤강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, 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(기금운용변경계획안)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삭제

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